

#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박마루 의원 (대표)발의)

의안 번호	1190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6년 5월 25일

발 의 자 : 박마루 의원(1명)

찬 성 자 : 우미경, 김현기, 최영수,  
성백진, 김선갑, 김제리,  
신건택, 이정훈, 강감창,  
김광수(도봉) 의원(10명)

## 1. 제안이유

- 서울시 광역치매센터장에 대해 상근 근무를 원칙으로 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 및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서울시 광역치매센터의 안정적 운영 및 치매관리사업의 전문적 수행을 도모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광역치매센터의 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함(안 제9조제2항 신설).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치매관리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 사항 없음
- 다. 기 타 :

##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 제목 운영비 지원을 운영비 지원 등으로 하고,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광역치매센터의 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운영비 지원) <u>시장은 제4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·계약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p>&lt;신 설&gt;</p>	<p>제9조(운영비 지원 등) ① <u>시장은 제4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·계약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<u>광역치매센터의 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.</u></p>

##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 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9조(운영비 지원 등) 제2항 “광역치매센터의 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”의 규정 신설에 따라 비용 발생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

### 3. 미첨부 사유

가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

나. 추계결과 ≙ 60,438천원

- 예상되는 비용이 5년동안 60,438천원으로 연평균 12,087.6천원임

다. 추계의 전제

- 1) 추계기간 이후에도 비용발생
- 2) 서울시광역치매센터 현재 1개소로, 향후 확충 계획 없는 것으로 가정
- 3) 국고보조사업으로 총 발생비용 중 국비(70%)를 제외한 시비(30%)만 산정
  - ※ 「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」 별표1에 의거 기준보조율 국비 70%, 시비 30% 준용
- 4) 2016년 상근센터장 인건비는 「2016년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」 준용
  - ※ 2016년 광역치매센터 상근센터장의 인건비는 매월 5,465,000원(매월 1,093,000원의 5배 범위안)
  - ※ 2차년도부터는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인상률(14년~16년)의 산술평균값 적용(3.05%)

라. 상세 비용추계 결과

- 총비용 : 60,438천원

(단위 : 천원)

구분 \ 연도	1차년도 (2016년)	2차년도 (2017년)	3차년도 (2018년)	4차년도 (2019년)	5차년도 (2020년)	합 계
세입	-	-	-	-	-	-
소계(a)	-	-	-	-	-	-
세출	11,372.4	11,719.26	12,076.7	12,445.03	12,824.61	60,438
소계(b)	11,372.4	11,719.26	12,076.7	12,445.03	12,824.61	60,438
총비용(b-a)	11,372.4	11,719.26	12,076.7	12,445.03	12,824.61	60,438

주1 : 상근센터장 인건비는 「2016년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」 지침 준용  
 주2 :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비(70%)를 제외한 시비(30%)만 비용 산정  
 주3 : 2차년도부터는 최근 3년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평균 인상을 반영(3.05%)

○ 총비용 =  $\sum_{i=1}^5$  (광역치매센터 상근센터장 인건비순증가 연간비용);

- 순증가 연간 비용 : 센터장 인건비 순증가 연간비용 ×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평균 인상률
- 인건비 순증가 연간비용(개정시 상근센터장 인건비 - '16 현행 비상근센터장 인건비)

(단위 : 천원)

구분	현행(A)	개정(B)	순증가 연간비용(B-A)
인건비 연간비용	8,301.6	19,674	△11,372.4
산출기초식	2,306천원*12개월*0.3(사비분)	5,465천원*12개월*0.3(사비분)	-

- 「2016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」에 의거 현행 비상근센터장 인건비 지급 기준은 2,306,000원(매월 2,116,000원에 수당 190,000원 포함), 개정시 상근센터장의 인건비 지급기준은 5,465,000원(매월 1,093,000원의 5배 범위안에서 월 지급액을 정하여 연봉계약이 가능함. 수당포함)
- ※ 2차년도부터는 최근 3년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평균 인상률(3.05%)을 반영('14년도 2.12%, '15년도 3.36%, '16년도 3.67%)

※ 2016년 광역치매센터 예산 참고자료

과목구분	세부 산출내역	
시책추진업무추진비	○ 1회 150,000*20회	= 3,000천원
민간위탁금	○ 인건비393,896,000원*1.0367(국고253,300천원)	= 408,706천원
	○ 복지수당 135,000원*6명*12개월	= 9,720천원
	○ 복지수당 190,000원*3명*12개월	= 6,840천원
	○ 사업비 270,515,000원*1년(국고 188,700천원)	= 270,515천원
	○ 운영비 146,179,000원*1년	= 146,179천원

※ 자료 : 서울시, 건강증진과

#### 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     예산정책담당관  
 담당관            남 승 우  
 정책조사팀장    여 차 민  
 주무관            최 경 희

☎02-3705-1282, e-mail([hiru90@seoul.go.kr](mailto:hiru90@seoul.go.kr))